

주식백지신탁제 시행 7년 모니터 보고서

- 03 요약
- 05 취지 및 목적
- 09 주식백지신탁제도 운영 실태 모니터
- 31 결론

차례

차례	2
요약	3
취지 및 목적	5
주식백지신탁제 시행 7년 모니터 조사 개요	9
2006~2012 주식백지신탁 심사 결과 종합 분석	10
2006~2012 주식백지신탁 심사 결과 각 부별 분석	13
1. 국회 심사 현황 분석	13
2. 사법부 등 심사현황 분석	15
3. 행정부 심사현황 분석	16
세부 분석 (1) 청와대	17
세부 분석 (2) 경제전반 관련 부처	21
세부 분석 (3) 부문경제 관련 부처	22
세부 분석 (4) 법무/사정/수사 부처	24
세부 분석 (5) 외교통상부	26
4. 현 주식백지신탁제도의 문제점와 개선 방향	29
결론	32
<별표 1> 2006~2012 백지신탁 심사 종합 현황표	33

2006~2012년까지 백지신탁위는 총 심사 대상 2,582명 중 464명의 주식에 대해 ‘직무관련 있음’ 결정

: 17.9%가 직무관련 주식 보유한 것으로 확인

백지신탁위, 대법원/검찰청/경찰청/외교통상부/국방부/국가정보원/행정안전부 등 고위공직자 소유 주식 모두 ‘직무관련 없음’ 결정

19대 국회와 대선 후보들은 주식백지신탁 제도 강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만들어야

- 참여연대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정보공개받은 지난 <2006년부터 2012년 5월 31일까지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이하 백지신탁위) 업무연관성 여부 심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현재의 주식백지신탁제도가 형식과 운영 양 측면에서 모두 상당히 미비하여 제도의 제정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함.
- 각 부에 대한 분석 결과 국회의 경우, 포괄적인 권한에도 불구하고 상임위 이동만으로 직무관련성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주식보유가 가능했으며, 대법원은 2006년 이래 한 건의 ‘직무관련 있음’ 결정도 없는 현상(0/61)¹ 등이 나타남.
- 행정부의 경우, ①청와대 ②금융위/재정기획부 등 경제전반 관련 부처 ③방송통신위 등 부문경제 관련 부처 ④검찰 등 법무/사정/수사 부처 ⑤외교통상부 등으로 좀 더 세분화하여 분석함.
 - 경제 관련 부처 중 국세청과 국토해양부는 백지신탁 심사대상자가 없고, 금융위, 지식경제부 등은 7년 간 심사 대상자가 1명에 불과한 바람직한 현상이 관찰되기도 하였음. 그러나 외교통상부 70명, 청와대 29명, 검찰청 21명, 구 행정자치부 포함 행정안전부 20명, 경찰청 16명, 국방부 16명 등은 심사 대상자가 다수 발생함.
 - 백지신탁위의 ‘직무관련 있음’ 결정의 경우, 기획재정부(2/3), 지식경제부(1/1)과 같이 일부 경제 관련 부처들에 대해서는 그 비율이 높았으나, 외교통상부(0/70)와 검찰청(0/21), 구 행정자치부 포함 행정안전부(0/20), 경찰청(0/16), 국방부(0/16), 국정원(0/7) 등은 많은 심사 대상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06년 이래 누구도 ‘직무관련 있음’ 결정을 받지 않아 백지신탁위가 전문적 세부 분야까지 총괄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는지 의문임.
 - 또 청와대의 경우, 2008년 정권초기에는 7/8명이 ‘직무 관련있음’ 결정을 받은 반면, 2010년은 0/7명으로 한 명도 ‘직무 관련있음’ 결정을 받지 않아 백지신탁위의 기준이 흔들린 것이

1 괄호 안은 백지신탁위의 직무관련 있음 결정비율(직무관련 있음 결정 수/심사대상자 총 수)임. 이하 같음.

아닌가 의심됨.

- 참여연대는 특징적인 몇 부처를 찾아 2012년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공개시 해당 관보를 살펴보고, 거의 모든 기업수사를 관할하는 서울중앙지검장 등 일선 지검장들의 주식보유(검찰청), 우즈베키스탄 대사의 우즈베키스탄 관련 의심주 보유(외교통상부), 방송통신위 고위공직자들의 정보통신 관련 주 다수 보유(방송통신위) 등의 문제 사례를 제시하며 백지신탁위의 기존 결정이 의문임.
- 참여연대는 결론에서 ①백지신탁위의 더욱 섬세하고 철저한 조사 ②2005년 행정자치부의 최초 입법예고 원안대로 재산공개 대상 고위공직자들은 포괄적 직무관련성을 인정하여 직무관련 판단 없이 일정 한도 이상(현재 3천만 원)의 주식 보유 금지 ③최근 유진그룹 관련주에 대한 차명 주식투자로 문제가 된 검찰, 다이아몬드 게이트 관련 CNK 주식투자로 문제가 된 외교통상부 등에 대한 재산공개 대상자 외 주식백지신탁 심사 대상 확대 ④재산공개 대상자들에게 대해서는 고지거부 적용 대상 제외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며 주장하며, **19대 국회와 대선 후보들은 주식백지신탁 제도 강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함**

취지 및 목적

- 2012년 11월 19일은 우리나라에서 주식백지신탁 심사 제도가 시행된 지 7주년이 되는 날이었음.(최초 시행 2005년 11월 19일). 이에 참여연대는 7년간의 제도 시행 과정을 되돌아 보고, 보다 나은 제도개선과 공직자윤리 개선 촉구를 위한 목적으로 이 보고서를 작성함.
- 주식백지신탁 심사제도는 고위공직자가 직무 관련 주식을 보유한 경우, 공무수행 과정에서의 공·사적 이해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게 함으로써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공직윤리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² 임.
- 우리나라는 현재 <공직자윤리법>상에 주식백지신탁 심사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재산공개 대상자³ 및 기획재정부의 금융 관련사무를 관장하는 국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및 금융위원회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⁴ 하는데, 이들은 본인 및 이해관계자(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모두가 보유한 주식의 총 가액이 3천만원⁵ 을 초과할 경우, 1개월 이내에 해당 주식을 매각하거나 수탁기관에 관리·운용·처분을 맡겨야(주식백지신탁, Blind trust) 한다고 규정하여 기본적인 공직자의 주식 소유 상한선을 정하고 있음.
 - 다만 백지신탁위로부터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결정을 통지받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는 규정으로서 상한선을 넘는 경우, 자동적으로 심사 대상자가 되어 심사 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음.
 - 백지신탁위는 주식의 직무관련성을 심사하는 정부위원회로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9인의 위원(위원장 포함)으로 구성하며, 3인은 대통령이 3인은 국회에서, 3인은 대법원장이 추천하도록 함.
 - 백지신탁위가 판단하는 직무관련성의 기준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27조의 8(직무관련성의 판단기준)의 각 호에 적시되어 있음.

2 정부공직자윤리위 홈페이지 <주식백지신탁제도 취지> http://www.gpec.go.kr/system/stocks_summary.jsp

3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1항

4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7조의3(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범위)

5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7조의4(주식백지신탁대상 주식의 하한가액)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27조의 8(직무관련성의 판단기준)

① 법 제14조의5제8항에 따른 주식의 직무관련성을 판단할 때에는 법 제14조의4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자등이 본인이나 그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을 발행한 기업의 경영 또는 재산상 권리에 관한 상당한 정보를 입수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에 종사하거나 그 직무를 지휘·감독하는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1. 관련 업종에 관한 정책 또는 법령의 입안·집행 등에 관련되는 직무
2. 각종 수사·조사·감사 및 검사에 관련되는 직무
3. 인가·허가·면허 및 특허 등에 관련되는 직무
4. 조세의 조사·부과 및 징수에 관련되는 직무
5. 법령상 지도·감독에 관련되는 직무
6. 예산의 편성·심의·집행 또는 공사와 물품의 계약에 관련되는 직무
7. 법령상 사건의 심리 또는 심판 등에 관련되는 직무
8. 그 밖에 심사위원회가 직무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직무

- 이러한 제도 마련은 2003년 진대제 당시 정보통신부 장관의 입각 과정 중 삼성전자 주식 9,194주와 7만주의 스톡옵션 처분 문제가 이슈화된 것이 가장 큰 계기로 작용함.
 - 당시 참여연대는 정보통신부의 단말기 보조금 지급 등의 업무는 해당 회사의 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직무로 정보통신부장관직과 이해충돌을 일으킨다며 주식을 처분할 것을 요구하며 주식 매각 촉구 공개서한 발송, 정보통신부 앞 50여 일 간 35인의 1인 시위 등의 시민항의 행동을 실행하였음.
 - 당시 참여연대는 정보통신부의 단말기 보조금 지급 등의 업무는, 해당 회사의 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직무수행으로 전형적인 이해충돌에 해당한다며 주식의 처분을 요구하였고, 주식 매각 촉구 공개서한 발송, 정보통신부 앞 50여 일 간 35인의 1인 시위 등의 시민항의 행동을 실행하였음.
 - 진 전 장관의 주식보유에 대한 시민행동은 결국 법 개정으로 이어져, 공직자윤리법 내에 주식 백지신탁제도 조항이 2005년 5월 18일 신설되어 2005년 11월 19일부터 시행되는 등의 가시적 성과를 가져옴.
- 그러나 공직자 이해충돌의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관해 사회적 격론을 벌여 생산적인 제도개선까지 이끌었던 초기 시행 시기와는 달리, 시행 7년을 경과한 현재에 있어서 그 본래적 의미가 점점 퇴색되는 듯해 우려됨.
 - 2008년 여름 미 투자은행인 리먼브라더스에 60억 달러의 공동 투자(하나은행/산업은행/한국투자공사/국민연금공단)를 추진했던 민유성 당시 산업은행 총재는 2005년 6월부터 리먼

브라더스 서울 지점 대표를 지낸 사실이 알려져 이해충돌 의혹에 휩싸임. 특히 2009, 2011, 2012년에 걸쳐 총 59,841주의 리먼브라더스 스톡옵션을 부여받을 예정이었는데 2008년 공직자 재산등록 시 이런 사실이 기재되지 않아 더욱 논란을 부추김. 그러나 **현행 법령 상 스톡옵션 등 주식매수선택권은 백지신탁 대상이 아니어서** 어떤 법적 조치가 내려지지는 않았음. 향후 스톡옵션 등에 대해서도 백지신탁 대상에 포함시켜야 할 것임.

- 재정경제부 기획관리실장 및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을 지냈던 배영식 18대 국회의원(한나라당)은 배우자가 주식 399,796주(신고가액 40억 여 원)를 보유하여 백지신탁위의 '직무관련 있음' 결정이 나자 불복하여 행정소송, 1심에서는 패소하였지만 2심에서 "다른 방식을 고민하지 않고 매각과 주식백지신탁 방식을 채택한 것은 사유재산제도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해 재산권을 보장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을 펴 2010년 법원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이끌어 냄. 결국 2012년 8월 23일 백지신탁제는 합헌 결정(2010헌가65) 되었으나, 소송중이라는 이유로 그 동안 주식을 처분하지 않아 당사자는 이미 입기를 마친 뒤였음. 이는 **상임위를 유지하고서도 소송을 통해 백지신탁을 회피한 사례**라고 볼 수 있음.
- 2012년 초 퇴직한 이인근 전 서울시 도시안전본부장(1급)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서울 지하철 9호선 등에 민자 참여하는 맥쿼리한국인프라투금융의 주식을 총 1만3천여 주를 매입하여 보유하였으나, 이 주식은 심사대상 아닌 주식으로 이미 고시되어 해당사항이 없었음. 이 사례는 **백지신탁위의 심사가 꼼꼼하지 못하다**는 반증으로 인용되고 있음.
- 김은석 에너지자원 대사는 외교통상부 명의의 카메룬 다이아몬드 매장량 4억 2000만 캐럿 확보 소개 보도자료를 내기 전인 2009년 1월 동생 2명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총 8만여 주를 매입함. 또 당시 전 국무총리실 자원협력과장은 본인이 2009년 CNK 주식 2800여 주를 매입하기도 함. **백지신탁 심사 대상자인 대사는 차명으로 직무관련 주식을 소유했으며, 심사 대상자가 아닌 자원협력과장은 거리낌없이 직무관련 주식을 매입한 것임.**
- 2012년 11월 경찰과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으로 재직 중이던 2008년, 내사를 무마하는 대가로 유진그룹 측으로부터 6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 2009년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씨 측근으로부터 2억 7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는 김광준 서울고검 부장검사가 2008년과 2011년 후배검사들과 함께 유진그룹의 미공개 내부정보를 제공받아 차명계좌로 주식에 투자해 2억 여 원의 시세차익을 남긴 혐의 사실을 발표함. **주식 백지신탁 심사 대상자가 아닌 직무관련 검사들이 내부 정보를 통해 주식을 매입한 것임.**
- 이상의 사례들은 현재의 백지신탁제의 대상은 좁은 반면, 판단은 치밀하지 못하여 발생한 문제들로 보임.
- 이번 보고서에서는 행정심판 과정을 통해 입수한 행정안전부 정보공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제도 운영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실시했으며, 정보공개자료로 부족한 부분은 해당 시기의 조사대상 공직자 재산공개 사항이 실린 관보 등을 참고하여, 시기별 부처별 공직자 주식보유 실태 및 백지신탁위의 결정 등을 모니터링하였음.

- 또한, 모니터링 이후 나타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과 함께, 내년 새로 구성될 정부가 제도개선을 추진해야 할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다루었음.

- 이 보고서가 좀 더 발전된 주식백지신탁제도 마련에 일조하기를 희망함.

주식백지신탁제 시행 7년 모니터 조사 개요

- 조사 분석 대상

- 2006년부터 2012년 5월까지 연도 별로 백지신탁위가 심사한 대상 주식 업무 관련성 심사 현황

- 조사 내용

- 연도별, 부처별 추이 분석을 통한 제도의 문제점 및 백지신탁위의 결정 적정성 여부에 대한 평가

- 참고 자료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행정심판행정심판을 통해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2006년부터 2012년까지 백지신탁위의 각 연도별 주식소유 심사 현황>
- 해당 시기 관보에 게재된 정기 재산공개 내역
- 주식백지신탁 결정 등 공고
- 각종 언론 보도 외

2006~2012 주식백지신탁 심사 결과 종합 분석

1. 2006~ 백지신탁위 심사 현황

- 다음 <표 1>은 행정안전부에서 공개한 자료⁶ 를 바탕으로 재구성⁷ 한 2006~2012 직무관련성 심사청구 및 심사결과 현황⁸ 임.

<표 1> 2006~2012 직무관련성 주식 심사청구 및 심사결과 현황 (종합)

구분	심사대상	심사결과				계류중
		소계	관련 있음	관련 없음	각하, 철회 등	
합계	2,582 (100%)	2,563 (99.2%)	464 (17.9%)	1,982 (76.7%)	117 (4.5%)	19 (0.7%)
행정부	소계	557	92	430	29	6
	공무원	308	35	255	16	2
	공직유관단체	249	57	175	13	4
지방자치단체	1,686	1,674	295	1,303	76	12
국회	소계	259	77	172	9	1
	국회의원	232	73	149	9	1
	전문위원 등	27	4	23	-	-
사법부	61	59	-	59	2	-
헌법재판소	5	5	-	5	-	-
중앙선관위	14	14	-	13	1	-

- 6 참여연대는 이명박 정부 5년차를 경과하는 현재의 시점에서 ‘이해충돌의 회피’라는 법 취지에 맞게 백지신탁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지를 조사하고자 하였으나 백지신탁제도의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의 비협조로 난항을 겪은 바 있음.
 - 2012년 6월 7일 <2006년부터 2012년까지 백지신탁위의 각 연도별 주식소유 심사 현황>을 행정안전부에 정보공개청구함.
 -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백지신탁위는 정보공개법에서 정하는 공공기관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고,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9조1항5호에 의해 비공개 대상 정보”라며 6월 18일 비공개 결정 통지.
 - 6월 20일 참여연대는 행정안전부의 이러한 비공개 결정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8월 21일 “행정안전부는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정보공개 의무를 이행하라”는 결정을 받음. 9월 19일 행정안전부로부터 해당 자료를 수령함.
- 7 행정안전부 정보공개 문서에는 입법/행정/사법 등 각 부 별로 총계표가 제시되어 있으나, 계류 중인 항목이 없어 이를 각 부처 연도별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함.
- 8 표 항목 중 ‘각하, 철회 등’은 해당 공직자의 잘못 기입 등으로 주식백지신탁 대상이 아닌 건들로서 해당

- 다음 <표 2>는 연도별 심사현황 중 심사 건 수 대비 '직무관련 있음' 결정 건 수를 정리한 것임.

<표 2> 2006~2012. 5 연도별 직무관련성 주식 심사결과 현황 (단위 : 건)

'직무관련 있음' 결정 건수/심사 건수		합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5월말까지)
합계		464/2,563건 (18.1%)	233/883건 (26.4%)	18/164건 (11.0%)	68/342건 (19.9%)	19/144건 (13.2%)	74/529건 (14.0%)	28/278건 (10.1%)	24/223건 (10.8%)
행정부	소계	92/551건 (16.7%)	24/132건 (18.2%)	12/56건 (21.4%)	30/109건 (27.5%)	5/44건 (11.4%)	3/63건 (4.8%)	8/95건 (8.4%)	10/52건 (19.2%)
	공무원	35/306건 (11.4%)	9/82건 (10.9%)	4/27건 (14.8%)	13/56건 (23.3%)	1/29건 (3.4%)	2/42건 (4.7%)	3/46건 (6.5%)	3/24건 (12%)
	공직유관단체	57/245건 (23.2%)	15/50건 (30%)	8/29건 (27.5%)	17/53건 (32%)	4/15건 (26.6%)	1/21건 (4.7%)	5/49건 (10.2%)	7/28건 (25%)
지방자치단체		295/1,674건 (17.6%)	176/649건 (27.1%)	5/93건 (5.4%)	16/148건 (10.8%)	5/66건 (7.6%)	63/420건 (15.0%)	17/151건 (11.3%)	13/147건 (8.8%)
국회 (의원/전문위원 포함)		77/258건 (29.8%)	33/83건 (39.8%)	1/9건 (11.1%)	22/71건 (31.0%)	9/26건 (34.6%)	8/37건 (21.6%)	3/19건 (15.8%)	1/13건 (7.7%)
사법부 등 (대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관위 포함)		0/80건	0/19건	0/6건	0/14건	0/8건	0/9건	0/13건	0/11건

- <표1>과 <표2>로서 다음의 결과를 볼 수 있음.
 - 2006년부터 2012년 5월까지 총 심사 대상은 2천 582건이었음.
 - 이 중, 지방자치단체 공직자⁹가 1천 674건으로 가장 많은 비율(총 심사대상 대비 64.8%)을 차지했음.
 - 한편, 현재까지 계류 중인 12건을 제외한 2천 563건 중 464건이 백지신탁위로부터 '직무관련 있음' 결정을 받음. 이는 총 심사 대상 대비 17.9%의 비율임.
 - 이 중에서 국회의원 등 국회 소속 공직자가 29.8%로 가장 높은 비율의 '직무관련 있음' 결정을 받았으며, 공직유관단체의 임원¹⁰이 다음(23.2%)으로 높았음.

공직자가 철회하거나 위원회에서의 각하 처리한 경우임.

9 지자체 소속 1급 이상 공무원, 기초/광역 단체장, 광역의회의원, 시도 교육감, 교육위원 등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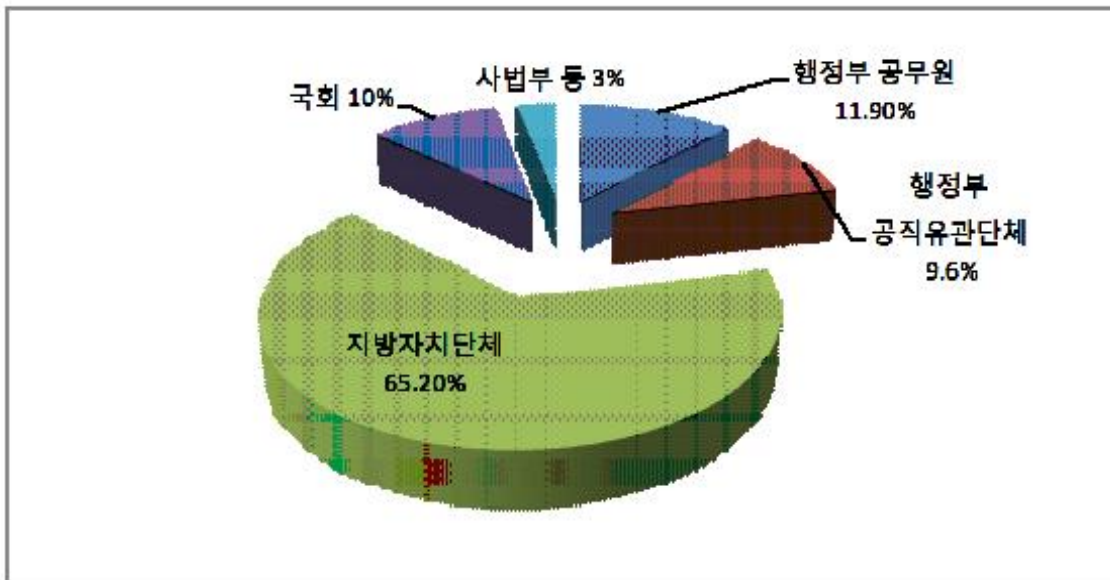
10 공직유관단체의 범위는 공직자윤리법 3조의 2(공직유관단체)에 의하면 1. 한국은행 2. 공기업 3.

재출자·재출연을 포함하여 정부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 그 밖에 정부 업무를 위탁받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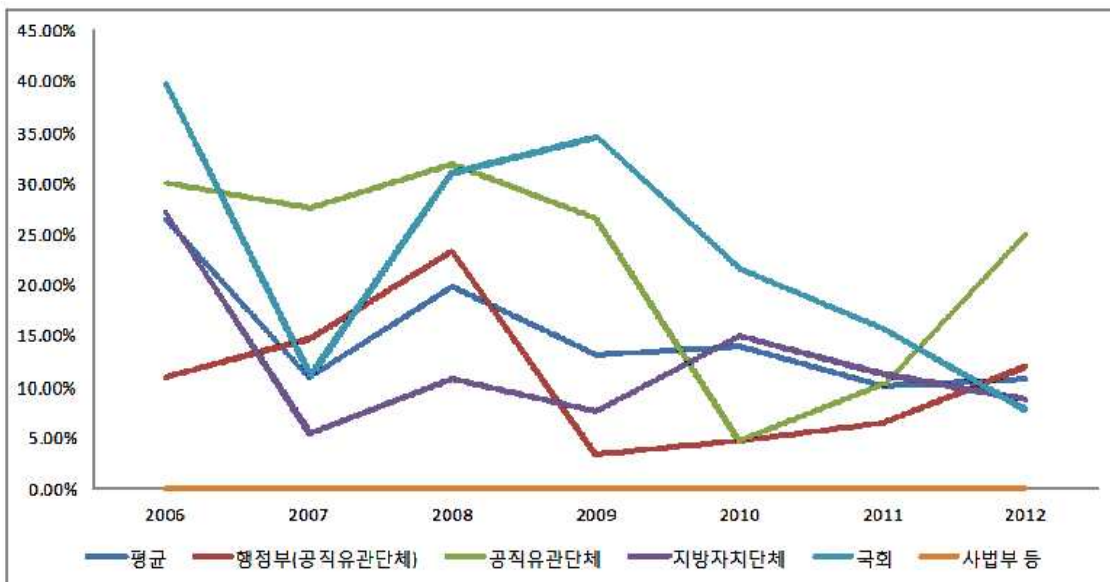
수행하는 기관·단체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보조를

- 사법부 등은 0/80건으로 한 건의 '직무관련 있음' 결정도 없었음.
- 소송 등으로 심사 계류 건은 총 19건이었음. 이를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서 해당 기관은 '직무관련 있음' 결정을 받은 공직자에 대해 직위 변경 조치 의무를 부여하는 조항을 삽입하는 법 개정이 요구됨.

<그림 1> 지난 7년간 각 부별 3천만 원 이상 주식 보유자 비율



<그림 2> 지난 7년간 백지신탁위의 '직무관련 있음' 결정 비율



받는 기관·단체(재출자·재출연을 포함한다),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단체
 5. 임원 선임 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동의·추천·제청 등이 필요한 기관·단체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원을 선임·임명·위촉하는 기관·단체 등임

2006~2012 주식백지신탁 심사현황 각 부별 분석

1. 국회 심사현황 분석

● 국회 연도별 심사 현황

- 아래 <표 3>은 국회의 연도별 심사현황임. 총 259명이 접수되어, 5월 말 현재 재판 계류 중인 한 명을 제외한 77명(접수 대비 29.7%)이 '직무 관련있음' 결정을 받음.
- 시행 첫 해인 2006년이 83명 접수, 33명 '직무관련 있음' 결정으로 39.7%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임. 다음 해인 2007년에는 11.1%로 급감 하였음.
- 급감의 이유로는 당시 백지신탁 적용 대상 의원들이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한 경우가 많으나, 당시 백지신탁위가 국회 상임위 중 정무위, 재경위, 예결위 소속 의원들에 대해서만 포괄적 직무관련성이 적용한다는 세부 기준을 밝히면서, 심사 결과를 회피하려는 의원들의 상임위 이동 현상 또한 반영된 결과임.
-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적용되어 새 국회가 구성되면 급증(2008년의 경우 71명 접수, 22명 '직무관련있음' 결정)하였다가, 이후 상임위 조정 등으로 다시 비율이 내려가는 현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남.

<표 3> 2006~2012 국회 직무관련성 심사청구 및 심사결과

(단위 : 명)

구분	연도	심사 대상	심사결과				계류중
			소계	있음	없음	각하 철회	
국회	2006	83	83	33	46	4	0
	2007	9	9	1	8	20	0
	2008	71	71	22	47	2	0
	2009	26	26	9	17	0	0
	2010	37	37	8	29	0	0
	2011	19	19	3	15	1	0
	2012	14	13	1	10	2	1
	소계	259	258	77	172	29	1

● 분석 결과

- 그러나 과연 의원 직무 성격상 '상임위 이동'이라는 '직무 회피' 행위만으로 주식백지신탁의 원래 목적이 달성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임.
- 참여연대는 그간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은 법률안 제출권, 상임위 활동, 본회의 표결 등을 통

해 법률의 제·개정을 담당하는 직무를 수행할 뿐 아니라, 국가 예산을 심의 확정하며 국정감사 등으로 행정부를 감사하고 상임위를 통한 자료제출 요청 권한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정 기업의 경영이나 재산상 권리에도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주식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 접근 가능성 또한 매우 높아, 국회의원 주식 직무관련성 심사 기준을 '소속 상임위'가 아닌 국회의원의 '권한'에 맞추어 실시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하였음.¹¹

- 한편, '소속 상임위' 판단 이후 지방의회 의원들까지 이러한 기준이 준용된다는 것도¹² 문제임. 의원의 수가 국회보다 소규모이고 상임위 수도 적은(7~8개) 지역사회에 기반한 지방의회에도 국회의 적용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은 문제라고 할 수 있음. 해당 지역과 관련성이 입증되는 주식이라면 지방의원의 경우에도 상임위 여부와 상관없이 일괄 적용되어야 할 것임.

11 2006. 2. 14 참여연대 논평 <심사청구한 국회의원 48명 전원 백지신탁되어야>
<http://www.peoplepower21.org/537720>

12 일례로 부산시가 운영하는 <청림韓 부산>블로그는 백지신탁 기준일의 하나로 '공개대상자의 직무가 변경된 날'의 예를 들며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의 경우 상임위가 변경된 날을 의미함'이라고 적시함.
'공직자윤리와 청림부산' 블로그 <주식백지신탁제도 안내> <http://blog.daum.net/finebusan/41>

2. 대법원 등(대법원/헌법재판소/선관위)의 심사 현황

<표 4> 2006~2012 대법원 등 직무관련성 심사청구 및 심사결과

구분	연도	심사 대상	심사결과				계류중
			소계	있음	없음	각하 철회	
대법원 등 (대법원/헌법재판소/선관위)	2006	19	19	0	19	0	0
	2007	6	6	0	6	0	0
	2008	14	14	0	13	1	0
	2009	8	8	0	8	0	0
	2010	9	9	0	8	1	0
	2011	13	13	0	13	0	0
	2012	11	11	0	10	1	0
	소계	80	80	0	73	3	0

● 분석 결과

- 대법원 등(대법원/헌법재판소/선관위)의 경우,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상의 판단기준 중 7호인 '법령상 사건의 심리 또는 심판 등에 관련되는 직무'에 직접 해당함.
- 그런데 대법원 등은 2006년 이후 총 80명이 3천만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여 심사받았는데 (대법원의 경우 총 61명) 심사 결과, 한 건의 '직무관련 있음' 결정도 없었음(0/80)
- 물론 법관의 경우 보직 여부보다는 개개별 사건을 다루는 직무 특수성으로 판단이 어려울 수 있으나, 100% '직무관련 없음' 결정은 선뜻 이해하기 어려움.
- 더욱이 대법원의 백지신탁 대상자는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인데, 이들의 보직 범위는 대법원장/대법관/사법연수원장/각급 법원장/법원행정처 차장/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법원도서관장/대법원장 비서실장/법원행정처 실장 등 보직 범위 역시 다양함을 볼 수 있음.¹³
- 오히려 불특정의 재판업무상 직무관련이 특정하기 어려운 만큼 포괄적 직무관련성이 가장 먼저 적용되어야 하는 대상임.
- 향후 대법원의 경우, 재산공개 대상 법관에 대해서는 주식에 대한 포괄적인 직무관련성을 인정해야 할 것임.

13 대법원규칙 제1889호 <고등법원부장판사급이상의법관의보직범위에관한규칙>

3. 중앙 행정부처의 심사 현황

- 중앙 행정부처의 개괄 현황은 <표 5>와 같음. 부처별 연도별 세부 현황은 <별표 1>로서 제시하였음.
 - 중앙 행정부처의 경우, 총 551명을 심사하여 92명이 '직무관련 있음' 결정을 받음.
 - 연도별로 보면 시행 첫 해인 2006년을 제외하면, 이명박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08년에 109건이 심사 대상으로 올라 최대였으며, '직무관련 있음' 결정율도 가장 높았음.
 - 공무원¹⁴ 보다 공직유관단체 임원¹⁵ 등이 심사대상 수와 '직무관련 있음' 결정률에서 모두 높았음.

<표 5> 2006~2012 행정부 직무관련성 심사청구 및 심사결과

구분	연도	심사 대상	심사결과				계류중	직무관련 있음 결정비율
			소계	있음	없음	각하 철회		
공무원 (정무직 및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이상, 금융위, 재정기획부 연관부서의 4급 이상)	2006	82	82	9	67	6	0	9/82(10.9%)
	2007	27	27	4	22	1	0	4/27(14.8%)
	2008	56	56	13	40	3	0	13/56(23.2%)
	2009	29	29	1	28	0	0	1/29(3.4%)
	2010	42	42	2	39	1	0	2/42(4.7%)
	2011	46	46	3	40	3	0	3/46(6.5%)
	2012	26	24	3	19	2	2	3/24((12.5%)
	소계	308	306	35	255	16	2	35/306(11.4%)
공직유관단체 임원	2006	50	50	15	33	2	0	15/50(30%)
	2007	29	29	8	21	0	0	8/29(27.5%)
	2008	53	53	17	34	2	0	17/53(32%)
	2009	15	15	4	11	0	0	4/15(26.6%)
	2010	21	21	1	19	1	0	1/21(4%)
	2011	49	49	5	38	6	0	5/49(10%)
	2012	32	28	7	19	2	4	7/28(25%)
	소계	249	245	57	175	13	4	57/245(23.2%)
총계		557	551	92	400	29	6	92/551(16.6%)

14 정무직 및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이상, 금융위, 재정기획부 연관부서의 4급 이상

15 공직자윤리위는 재산공개 대상 공직유관단체의 임원을 매년 분기별로 고시하고 있음. <http://bit.ly/R40fj3>

- 부처별 특성을 좀 더 자세하게 비교하기 위해 정보공개 받은 자료 중 (1)청와대 (2)경제전반 관련 부처 (3)부문경제 관련 부처 (4)법무/사정/수사 부처 (5)외교통상부 등을 구분하여 해당 부처들을 구분 분석해 보고자 함.

(1) 청와대

- 청와대의 경우 백지신탁 심사 대상은 30명이며, 13명이 '직무관련 있음' 결정을 받음(43.3%).

<표 6> 대통령실 2006~2012 백지신탁 심사 현황

(단위 : 명)

구분	연도	심사 대상	심사결과				계류중	'직무관련 있음' 결정 비율
			소계	있음	없음	각하 철회		
대통령실/대통령 비서실 /경호실	2006	4	4	3	0	1	0	
	2007	2	2	1	0	1	0	
	2008	8	8	7	0	1	0	
	2009	2	2	0	2	0	0	
	2010	7	7	0	7	0	0	
	2011	5	5	1	4	0	0	
	2012	2	2	1	1	0	0	
	소계	30	30	13	14	3		13/30(43.3%)

● 2008년과 2010년 세부 내역 비교

- '직무관련 있음' 결정 비율은 2008년과 2010년이 특히 높았는데, 이 시기는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 참모진 1기와 2기로 새로 구성된 인원이 대거 등록되었던 때임.
- 그런데 2008년은 7/8명이 '직무관련 있음' 결정을 받은 반면, 2010년은 0/7명으로 한 명도 '직무관련 있음' 결정을 받지 않았음.
- 이에 2008년은 1명을 제외하면 직무연관성이 확인된 주식이며, 2010년은 모두 직무연관성 없다고 확인된 주식이라고 가정한다면, 백지신탁위의 판단에 대한 의미있는 검토가 가능하다고 보아, 따로 정기 재산공개사항이 실린 관보를 조사¹⁶ 하여 <표 7>과 같이 2008년과 2010년 3천만원 이상 주식을 보유한 청와대 공직자들의 보유주식을 비교하였음.¹⁷ 그러나

16 2008년은 4. 24일자 관보 중 정부공직자윤리위공고 2008-9호, 2008, 5, 7일자 관보 정부공직자윤리위공고 2008-11호를 조사하였고, 2010년은 4. 2일자 정부공직자윤리위공고 제 2010-6호를 조사함.

17 2008년은 최초 등록, 2010년은 관보 정기 등록만으로 조사했고 또 등록 이후 즉시 매각하면 백지신탁위의

조사 결과, 2008년 주식 보유 내역과 2010년 주식 보유 내역 상으로는 큰 차이가 없었음.

- 결국 백지신탁위 결정 내용이 다른 이유는 직무관련성 판단 여부가 아닌 다른 곳에서 찾아야 할 것으로 보임. 2008년은 새 정부 구성 시기였으며, 당시 고소영 내각 등에 대한 부정적 여론과 사회적 감시의 눈이 높아 백지신탁위도 이에 부응하는 결정을 내렸으나, 2010년은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했던 것이 아닌지 의심됨.

<표 7> 대통령실 2008년과 2012년 3천만원 이상 주식보유 공직자의 주식보유내역

성명	당시 직책	직전 직책	등록 시기	유가증권			세부 내역
				변화 여부	소유 구분	현재 가액	
2008년 (13명)							
김강욱	민정2비서관	대검 중수2과장	2008	2008년 4월 전부매각, 증여세납부	본인 배우자 장남	1,603,992	본인 <상장> KT2,093주 SK텔레콤407주, 부산은행29,300주, 신한금융지주7,010주 배우자 <상장> 부산은행7,350주, 영원무역3,500주, 유화증권2,190주, 한국전력3,000주, 신한금융지주8,530주 장남 <상장> 신한금융지주 1,970주
김병국	외교안보수석	고려대 정외과 교수	2008	직무관련성 심사청구	본인	692,770	본인 <비상장> 동아일보3,554주, 주식회사 주원 135,000주
강훈	법무비서관	법무법인 바른 대표변호사	2008		본인	338,854	본인 <상장> 삼성카드 6,577주
이선용	환경비서관	금강환경관리청장	2008		본인	298,918	본인 <상장> CJ 63주, KTF 25주, SK에너지 33주, 한솔CSN 100주, CJ제일제당 37주 <비상장> (주)팬지아 21,199,479주
장용석	민정1비서관	두라 대표변호사 중앙지검특수2부 부 부 장 (2001)	2008	상장(배)매각	배우자	242,876	본인 <비상장>에이프릴디자인 90,000주 배우자 <상장> LS전선 1,300주, 한국타이어 5,500주 <비상장> 코리아티슈뱅크 17,872주
김백준	총무비서관	인수위원회 비서실 총 무 담 당 보좌역	2008	매각완료	배우자	215,113	배우자 <상장> 다음 40주, POSCO 45주, 디앤샵 35주, 현대차 560주, 고려아연 55주, 국민은행 600주, 신한지주 5주, 외환은행 325주, 삼성중공업 1,700주, 한국기술산업 10,000주

심사를 받지 않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의 통계와 비교하면, 그 수는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음. 조사결과 2008년 13명, 2010년 5명이 3천만원 이상 주식보유 사항을 등록하였음.

							<기타(증권)> 삼성증권1037CB 23,400,000주
박홍신	언론1비서관	경향신문 부국장	2008		본인 배우자	139,351	본인 <상장> SK텔레콤 100주 배우자 <상장> KTF 71주, SK텔레콤 400주, 삼지전자 1,000주 <회사채> 현대카드 32,000주
김은혜	부대변인1비서관	MBC기자	2008	직무관련성 심사청구중	본인	93,860	본인 <상장> 신세계 100주, 삼성전자 60주
김희중	제1부속실장	서울시장 의전비서관	2008		본인	90,309	본인 <상장> 유진로봇 29,249주
이동관	대변인	인수위대변인 동아일보 논설위원	2008	매각 예정	배우자	65,808	배우자 <상장> 모코코 75,642주
김휴중	문화예술비서관	추계예대 교수	2008	직무관련성 없는것으로 고시된 주식	본인 배우자	52,152	본인 NanoLifeScience, INC 10,526주, 배우자 <상장> ㈜위즈워드 760 주
김동연	재정경제비서관	기획예산처 재정정책기획관	2008		본인 배우자	48,830	본인 <상장> KT&G 36주, 국민은행 180주, 하이닉스 1,000주, 한국가스공사 52주 배우자 <상장> KTF 54주, KT&G 36주, 한국가스공사 52주
황준기	행정자치비서관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 제본부장	2008	매각/양도 조치완료	본인 배우자 차남	46,977	본인<상장> 한솔제지 3,000주 <비상장> 해양통산 1,500주 배우자<비상장> 동우엔지니어링 1,000주 차남 <상장> SK증권40주, 컴투스 4주, STX펜오션 50주, 한진중공업 10주, 대우조선해양 7주, 에이스디지텍 40주, 하나로텔레콤 61주, 두산인프라코어 10주
이영호	고용노사비서관	당 선대위 노동총괄단 장	2008	매각완료	본인	39,885	본인 <상장>코디팜 47주, 하이스마트 10,400주, 현대아이티 5,166주

2010년 (5명)

이승미	여성가족 비서관	우석대교수	2010	등록추가	모	945,583	모 <상장> 유진투자증권 16,000주, 삼성전자 400주, 진흥기업 1,000주, 태영건설 11,900주, 계양전기 3,000주, 금호산업 1,000주, 신세계푸드 1,166주, LG디스플레이 2,500주, 대한제강 3,000주, 포스코 7주, 현대증권 1,000주, 자화전자 1,000주, 하이닉스 2,000주, STX조선해양 500주, 삼성SDI 50주, 한국전력 40주, 현대산업 500주, 삼성물산 800주,
-----	-------------	-------	------	------	---	---------	---

							세아베스틸 2,200주, 알앤엘바이오 3,032주, LG전자 20주 <비상장> 솔본 2,536주, 제이콤 3,000주, 큐릭스 500주, AJS 1,000주, 다음 950주, 스타엠 6,146주, 아토 2,500주, YTN 500주, 세계투어 9,811주, KH바텍 4,700주
정문헌	통일비서관	한 나 라 당 원내부대표	2010	평가가액 변동	본인	276,753	본인 <상장> (주)금양 2,560주 <비상장> (주)단천 9,000주, (주)더스포츠 46,000주
김진모	민정2비서관	법무부 정 책기획단장	2010	가액변동	배우자	108,911	배우자 <상장> SK(주) 289주, SK에너지주식회사 708주
남양호	농수산식품 비서관	삼성경제연 구소 경영전략실 수석연구원	2010	아파트 구매위해 일부매각	배우자	61,309	배우자 <상장> SK 75주, 슈프리마 300주, 터보테크 3,500주, 인터파크 2,300주, 하이닉스 110주, 대우조선해양 320주, SK에너지 10주, 셀트리온 1,040주, 삼성중공업 70주, 한국금융지주 30주
김이환	과학기술 비서관	교육과학기술부 과학기술정책 기획관	2010	투자종목변 경및주가하 락에따른변 동	본인 부	47,323	본인 <상장> 신한지주 45주, KT 60주, SK에너지 13주, 주성엔지니어링 300주, 삼성전자 20주 부 <상장> 오리온 40주, 녹십자 70주

● 평가

- 대통령실은 마치 또 하나의 내각과 같이 행정부의 각 부처에 조응하는 수석실을 구성하고 부처 등과 정책을 조율하여, 국정운영의 핵심을 담당하는 부처임. 공식 직위 상으로는 대통령 실장은 장관급, 정책실장 및 각 수석은 차관급이지만 대통령의 의지를 정리하고 전달하는 위치상 정치적 지위는 한 단계 이상 상향 간주하는 것이 보통임.
- 이러하다면 이들이 다루는 업무 영역 또한 특정 소관 업무를 넘어서 국정 전반에 영향을 끼친다고 보아야 할 것임. 이명박 정부의 경우, 2008년 취임 초기에는 청와대 고위공직자 임명 직후 당사자가 스스로 주식을 매각하는 등 이러한 인식이 존재했으나, 갈수록 느슨해짐. 백지신탁위도 일관적 평가를 하지는 못한 듯함.
- 차기 정부는 이러한 이명박 정부의 전철을 벗어나야 할 것임.
- 주식백지신탁의 본래 의도는 이해충돌 가능성이 높은 주식의 취득을 제한하는 것임. 공직자는 이해충돌회피를 위해 주식을 소유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소액의 주식은 별도로 하더라도, 직무관련성 판단을 받아야 하는 규모의 주식의 경우는 대통령실부터 솔선 수범하여 보유하지 않도록 하고 각 정부 고위공직자들에게도 적용되는 법령개선에 나서야 할 것임.

(2) 경제전반 관련 부처 심사현황 분석

- 아래의 <표 8>은 공정거래위/관세청/금융위/기획예산처/기획재정부/산업자원부/지식경제부 등 경제 전반의 정책에 가장 민감하다고 볼 수 있는 전/현 8개 행정 부처(“경제전반 관련 부처로 표현함) 그룹의 백지신탁심사 접수 및 경과 현황임.
- 특히 금융위와 기획재정부의 금융정책/은행/증권/보험 담당 국의 경우, 재산공개 대상 고위공무원 뿐 아니라 4급 이상 공무원들로 대상 범위가 확대 시행되고 있음.

<표 8> 경제전반 관련부처 백지신탁 심사 현황

구분 (가나다 순)	연도	심사 대상	심사결과				계류중	‘직무관련 있음’ 결정 비율
			소계	있음	없음	각하 철회		
공정거래위 원회	2006	1	1	1	0	0	0	
	2009	1	1	1	0	0	0	
관세청	2009	1	1	0	1	0	0	
금융위원회	2010	1	1	0	1	0	0	
기획예산처	2006	1	1	0	1	0	0	
기획재정부	2008	1	1	1	0	0	0	
	2012	2	1	1	0	0	1	
산업자원부	2006	1	1	0	1	0	0	
재정경제부	2006	1	1	0	1	0	0	
지식경제부	2012	1	1	1	0	0	0	
소계		14	13	6	6	1	46.7%(6/13)	

● 분석결과

- 백지신탁 심사 대상으로 보면, 2006년 이후 총 13명이 3천만원 이상 주식을 소유하여 백지신탁 심사를 받음. 이는 타 부문에 비교할 때 양호한 수치인데, 해당 부처 공직자들은 제도가 지속적으로 진행되면서 대체로 긍정적인 ‘학습’을 받았다고 볼 수 있겠음. 또한 이 부분에 속할 국세청은 한 명의 심사 대상자도 없었음.
- 그런데 이 13명 중 ‘직무관련 있음’결정을 받은 공직자는 6명이었는데(46.7%), 이는 타 부처에 비해 결정률이 높은 경우에 속하지만, 이 부처 그룹의 업무 성격상 ‘직무 관련 없는 주식’을 고르기가 더 어려울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함.

(3) 부문경제 관련 부처 심사현황 분석

- 해당 부문의 경제정책에 영향을 받는 '부문경제' 관련 그룹은 노동/과학·교육/방송통신/식품·보건·농림·문화·환경 등 19개 전/현 행정부처들로 구성함.

<표 9> 부문경제 관련 부처 백지신탁 심사 현황

구분 (가나다 순)	연도	심사 대상	심사결과				계류중	'직무관련 있음' 결정 비율	
			소계	있음	없음	각하 철회			
노동	노동부	2007	1	1	1	0	0		
		2008	2	2	1	1	0		
	고용노동부	2011	2	2	0	2	0		
과학/ 교육	과학기술부	2006	3	3	1	1	1	0	
	국가기술자문위	2007	1	1	0	1	0	0	
	국가과학기술위	2012	2	2	0	1	1	0	
	교육과학기술부	2008	2	2	0	2	0	0	
		2010	1	1	0	1	0	0	
		2011	1	1	0	1	0	0	
		2012	1	0	0	0	0	1	
교육인적자원부	2007	1	1	0	1	0	0		
방송 통신	방송위원회	2006	6	6	0	5	1	0	
	정보통신부	2006	2	2	1	1	0	0	
	방송통신위원회	2008	5	5	0	5	0	0	
		2009	1	1	0	1	0	0	
		2010	1	1	0	1	0	0	
2011	2	2	1	1	0	0			
식품/ 보건/ 농림/ 문화 관광/ 해양/ 환경	식품의약품안전청	2006	1	1	0	0	1	0	
	보건복지가족부	2008	2	2	0	2	0	0	
	보건복지부	2007	1	1	0	1	0	0	
		2010	1	1	1	0	0	0	
	농림부	2006	1	1	0	1	0	0	
	농촌진흥청	2008	1	1	0	1	0	0	
	농림수산식품부	2008	1	1	0	1	0	0	
		2011	3	3	1	2	0	0	
		2012	1	1	0	1	0	0	
	문화체육관광부	2006	1	1	0	1	0	0	
		2008	1	1	0	1	0	0	
		2011	2	2	0	1	1	0	
해양수산부	2006	2	2	1	1	0	0		
	2008	1	1	0	0	1	0		
환경부	2011	2	2	0	2	0	0		
소계			14	13	6	6	1	1	46.7%(6/13)

● **분석 결과**

- 이 그룹에 속할 국토해양부/(구)건설교통부 등도 7년 간 한 명의 심사 대상도 없었음.
- 또 전체 경제관련 부처보다 훨씬 많은 부처가 포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상자가 14명 수준으로 양호하였음. 심사 결과도 46.7% 정도가 '직무관련 있음' 결정을 받아 주식을 백지 신탁하거나 매각해야 했음.
- 그러나, 방송통신 분야의 경우 거의 매년 심사 대상이 발생하였는데, 타 부서에 비해 재산 공개 대상인 위원회 위원 등 정무직 등이 많아 발생한 문제로 보임.
- <표 10>은 2012년 관보를 통해 파악한 3천만 원 이상 방송통신위원회 고위공직자들의 주식 보유 현황임. <표 9>에 2012년 방송통신위원회 항목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니, 이들은 이전에 주식 직무관련 심사를 받았을 것임. 그런데 이들이 보유한 주식 역시 방송통신 직무관련 의심 주식이 섞여 있음.

<표 10> 2012년 3만 원 이상 주식 소유 방송통신위 고위공직자

이름/직책	주식 보유 내역	액수(천원)
홍성규 방송통신위 부위원장	<p>본인 <상장주식> 한국타이어 70주, 현대중공업 3주, LG화학 5주, CJ제일제당 16주, SK C&C 19주, 삼성물산 84주, 현대차 19주, 호남석유 6주, SK브로드밴드 382주, 삼성화재 9주, 현대위아 18주, 롯데쇼핑 2주, 삼성전자 14주, 엔씨소프트 17주, 다음 26주, 현대글로벌비스 17주, 금호석유 8주, SK텔레콤 15주, 만도 15주 <비상장주식> 지피제약 6,750주, 두리네트웍스 20,000주</p> <p>배우자 <상장주식> CJ 1주, 포스코 21주, 삼성생명 35주, LG생명과학 151주, 현대중공업 20주, 신세계 31주, 삼성전기 31주, 한국정보통신 390주, 이마트 33주, 알앤엘바이오 150주, 현대차 8주, 미래에셋증권 35주, KB금융 34주</p>	123,334
서종렬 한국인터넷진흥원장	<p>본인 <상장주식> S&T대우보통주 160주, 지능정보(주) 31,000주</p> <p>배우자 <상장주식> SK 59주, LG디스플레이 460주, 롯데쇼핑 15주, 강원랜드 150주, CJ E&M 70주, 하이닉스 502주, 기업은행 470주, KODEX 자동차 153주, 넥스트칩 2,000주, 금호석유 19주, 현대제철 93주, 현대중공업 17주, 현대모비스 113주, 후성 1,430주, 유진테크 269주, 코오롱인더 70주, 삼성전자 108주, 제일모직 148주, JW중외신약 1,030주, SK C&C 24주, KT&G 35주, 고려아연 26주, LG화학 50주, LG 219주, GS건설 50주, NHN 10주, 디아이 8,500주, 세아베스틸 217주, 게임빌 42주, 대한항공 30주, 이지바이오 1,592주, SK이노베이션 80주, 자화전자 310주, 삼성물산 210주, 삼성SDI 32주, 호남석유 34주, 기아차 600주, KB금융 90주, 우리투자증권 430주, 현대차 163주, 현대해상 80주, 현대건설 100주, LG패션 20주, 대현 2,000주 <금융채> 네오위즈인터넷 1,000주, 에스엠 600주</p> <p>장녀 <상장주식> KPX화인케미칼 580주, 이구산업 2,000주</p>	562,828

(4) 법무/사정/수사 부문 부처 심사현황 분석

<표 11> 법무/사정/수사 백지신탁 심사 현황

구분 (가나다 순)	연도	심사 대상	심사결과				계류 중	'직무관련 있음' 결정 비율
			소계	있음	없음	각하 철회		
감사원	2009	2	2	0	2	0	0	
검찰청	2006	4	4	0	3	1	0	
	2007	2	2	0	2	0	0	
	2008	3	3	0	3	0	0	
	2009	6	6	0	6	0	0	
	2011	4	4	0	4	0	0	
	2012	2	2	0	2	0	0	
경찰청	2006	5	5	0	4	1	0	
	2007	1	1	0	1	0	0	
	2008	2	2	0	2	0	0	
	2009	2	2	0	2	0	0	
	2010	3	3	0	3	0	0	
	2011	2	2	0	2	0	0	
	2012	1	1	0	1	0	0	
국가정보원	2008	2	2	0	2	0	0	
	2009	3	3	0	3	0	0	
	2010	1	1	0	1	0	0	
	2012	1	1	0	0	1	0	
법무부	2006	1	1	0	1	0	0	
	2008	1	1	0	1	0	0	
	2010	4	4	0	3	1	0	
	2011	1	1	0	1	0	0	
소계		53	53	0	49	4	0	0% (0/53)

- '법무/사정/수사 부문' 관련 그룹은 감사원/검찰/경찰/국정원/법무부 5개 부처임. 이들은 공직 자윤리법 시행령 상의 판단기준 중 2호인 '각종 수사·조사·감사 및 검사에 관련되는 직무'와 연 관되는 부서 그룹이라고 할 수 있음.
- 분석 결과
 - 2006년 이후 이 그룹에서는 총 53건의 심사 대상자가 있었음. 이는 심사 대상자가 경제전반 관련 부처그룹 14명, 경제 부문 관련 부처그룹 13명에 그친 것에 비하면 상당히 많다고 볼 수 있음. 더구나 이 분야는 따로 외부 인사가 잘 임명되는 분야도 아님.

- 그런데 심사에서는 2006년 이후 단 한 명도 '직무관련 있음' 결정을 받지 않았음.
- 물론 이들 부처들은 법무/사정/수사라는 일반 행정부처의 업무 연관성 여부로는 판단하기 어려운 고유한 업무 영역을 가지고 있지만, 사건을 위주로 대응하는 부처의 특성상, 이해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훨씬 많은 것도 사실임.
- 2012년 11월 경찰은 유진그룹으로부터 6억 여 원을 받은 김광준 서울고검 검사와 후배검사 3명 등이 김광준 검사의 차명계좌를 통해 유진기업 주식을 거래했다는 혐의 등을 발표하였는데, 이와 같은 사례를 보면 이 부처들은 주식 업무연관성의 무풍지대가 결코 아님.

● **검찰 주식 보유 조사 결과**

- 다음 <표 12>는 2012년도의 관보를 통해 확인한 3천만 원 이상 주식을 보유하여 주식백지신탁 심사 대상자인 당시 검찰 고위공직자들의 주식보유 현황임.
- 이를 보면 서울중앙지검장 등 모두 일차적 직접적인 수사를 다루는 일선 지검의 검사장들이며, 김병화 전 인천지검장은 대법관으로 추천까지 되었던 경우임.
- 특히 거의 모든 기업에 대한 수사를 총괄하는 서울중앙지검장 등의 주식보유는 이해충돌 가능성이 입증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표 12> 2012년 3천만원 이상 주식 소유 검찰 고위공직자

이름/직책	주식 보유 내역	액수(천원)
김병화 인천지검장(전) (대법관 낙마)	배우자 <상장주식> LG화학 11, SK 57주, 금호석유 12주, 대덕전자 10주, 대림산업 3주, 유진테크 16주, SKC&C 6주, 삼성증권 21주, 고려아연 4주, 삼성전자 34주, 제일모직 33주, LG상사 136주, 게임빌 34주, 대한항공 35주, 세아베스틸56주, KT 30주, 현대백화점 13주, 네오위즈게임즈 14주, 자화전자 50주, 삼성물산 49주, 호남석유 54주, 삼성SDI 4주, LG패션 120주, KB금융 10주	496,226
문무일 광주지검장 권한대행	본인 <비상장주식> 지능정보(주) 31,000주 배우자 <상장주식> 이오테크닉스 1,080주 장녀 <상장주식> 오스코텍 4,070주 차녀 <상장주식> 오스코텍 4,070주 삼녀 <상장주식> 오스코텍 4,070주	88,361
신경식 청주지검장	본인 <상장주식> 뉴인텍 3,500주, GIIR 50주 <비상장주식> 램퍼스테크 5,000주, 유디웍스 50,100주 배우자 <상장주식> 뉴인텍 311주, 애플 20주 <비상장주식> 유디웍스 56,755주 장남 <상장주식> 뉴인텍 7,128주 <비상장주식> 유디웍스 3,211주 차남 <상장주식> 뉴인텍 5,786주 <비상장주식> 유디웍스 3,211주	99,859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	배우자 <상장주식> SK 422주, LG디스플레이 400주, CJE&M 66주, 강원랜드 150주, 롯데쇼핑10주, 하이닉스 734주, 금호석유 40주, 기업은행 460주, 엔씨소프트 5주, 현대모비스 66주, 현대제철 159주, OCI 58주, S-Oil 42주, 제일모직302주, 삼성전자 302주, SKC&C 150주, 한국타이어 210주, 코오롱인더 339주, 고려아연 13주, 우리금융 925주, 신한지주 258주, 풍산 250주, LG화학 57주, GS건설 151주, LG 150주, 게임빌 270주, LG상사 1,210주, 세아베스틸 520주, NHN 19주, 락앤락 230주, SK이노베이션 67주, 이지바이오 1,561주, 대우인터내셔	2,225,462

	널 300주, 호남석유 339주, 삼성물산139주(139주증가), 삼성SDI 31주, 성광벤드 328주, 삼성엔지니어링 49주, 기아차133주, LG패션 890주, 우리투자증권 220주, 현대차 146주, 현대해상 70주, 현대건설 152주 <비상장주식> 주식회사진승 4,950주, 동연내장 주식회사 7,800주, 제성내장 2,500주, 한민내장 주식회사 2,450주, 성원매트주식회사 2,600주 장남 <상장주식> 한국전력 410주
--	--

● **평가와 제안**

- 백지신탁 심사 대상을 확대하고, 재산공개 대상인 검사장 급 이상 검사는 포괄적 직무관련성을 적용하여 상한 이상의 보유 자체를 금지해야 할 것임.

(5) 외교통상부 심사 현황 분석

<표 13> 외교통상부 백지신탁 심사 현황

(단위 : 명)

구분 (가나다 순)	연도	접수	심사결과				계류 중	'직무관련 있음' 결정 비율
			소계	있음	없음	각하 철회		
외교통상부	2006	25	25	0	25	0	0	
	2007	7	7	0	7	0	0	
	2008	10	10	0	10	0	0	
	2009	5	5	0	5	0	0	
	2010	10	10	0	10	0	0	
	2011	9	9	0	9	0	0	
	2012	4	4	0	4	0	0	
소계		70	70	0	70	0	0% (0/70)	

● 외교통상부의 결과는 '법무/사정/수사 부문' 관련 그룹의 결과와 비슷했음.

- 외교통상부는 총 심사 대상자가 70명으로 행정 부처 중 가장 많았지만, 심사 결과는 모두 '직무관련 없음'이었음.
- 그러나 2012년 1월 감사원은 카메룬 다이아몬드 CNK 주가조작 건으로 외교부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주식 거래내역을 점검한 결과 직무를 이용해 주식을 직간접적으로 부당거래한 내부자는 김은석 에너지자원대사(2009년 1월에 동생 2명에게 정보 제공, 총 8만여 주 매입)와 전 국무총리실 자원협력과장(본인이 2009년 CNK 주식 2800여 주 매입) 등 모두 4명인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힘.
- 이러한 사례를 보면 외교통상부 등은 정보접근 권한은 오히려 타 부서보다 커, 훨씬 다양한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음.

● **주식 보유 조사 결과**

- 다음 <표 14>는 2012년도의 관보를 통해 확인한 3천만 원 이상 주식을 보유하여 주식백지 신탁 심사 대상자인 외교통상부 소속 고위공직자들의 주식보유 현황임.
- 이들은 모두 '직무관련 없음' 결정을 받은 대상일 것임.

<표 14> 2012 백지신탁 심사 대상 외교통상부 고위공직자

이름/직책	주식 보유 내역	액수(천원)
문하영 재외동포 영사대사	본인 <상장주식>벽산건설 6주, <비상장주식> 에스에프시 480주, 인테크전자 18,895주 배우자 <상장주식> 디지털퓨전 140주, 동서 900주	41,038
김한수 (전북과전) 국제 관계자문대사	배우자 <상장주식> 한화 70주, SK케미칼 35주, 한진중공업 30주, 하이닉스 100주, 대한항공보통주 100주, 현대중공업 25주, 태양산업 30주, 기아자동차보통주 50주, 삼성SDI 60주, 삼천리자전거 30주, 승일 30주, 금호타이어 50주, 이오테크닉스 1,080주 장남 <상장주식> 삼성증권 10주, 태양산업 100주, 아이마켓코리아 70주, 하이닉스 200주, SK케미칼 10주, 한진중공업 30주, 기아차 30주, E1 95주, 삼천리자전거 110주, 키움증권 10주, 승일 30주	46,199
김영원 (공로연수) 본부대사	배우자 <비상장주식> 아이에스에이상사 1,880주 장남 <비상장주식> QCP벤처투자조합17호 500주	68,800
전대완 주우즈베키스탄 특명전권대사	본인 <상장주식> 유니슨 384주 배우자 <상장주식> 삼성테크윈 1,100주, 유니슨 610주 장녀 <회사채> 세맨틱스 20,000주	76,472
위성락 주러시아 특명전권대사	배우자 <상장주식> 쌍용차 1,002주, POSCO 130주, 삼성전자 10주, 삼성전기 450주, 우리금융 100주, LS산전 50주, 손오공 800주, 에스피지 525주, 다날 40주, 미래에셋증권 450주	123,911
최종현 주오만 특명전권대사	본인 <상장주식> 이엔에프테크놀로지 30,600주, 화신 3,000주, LG화학 50주, 성우하이텍 4,375주, 한일이화 4,000주 <비상장주식> 우리에너지 500주, 사이버알닷컴 600주, 이지오스 100주 배우자 <상장주식> KT 6주	551,071
김병국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	본인 <비상장주식> 동아일보 3,554주, 주식회사 주원 30,000주 장남 <비상장주식> (주)알에프트론 100주 차남 <비상장주식> (주)알에프트론 100주	168,770
김경근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본인 <상장주식> 우리금융 2,360주, 아시아나항공 4,000주, 삼성중공업 370주 배우자 <상장주식> STX엔진 2,830주, 웅진홀딩스 905주, 코오롱 1,000주, 우리금융 8,340주, 삼성중공업 1,470주, 미래에셋증권 4주, 우리투자증권 180주	241,479

- 그런데 주 우즈베키스탄 대사(취임 2010년 1월)가 보유한 유니슨의 경우, 2009년 5월 이명박 대통령 우즈베키스탄 방문시 동석하여 현지 국영 기업들과 풍력발전 MOU를 체결했다고 발표한 우즈베키스탄 관련 주임이 확실함.

- 이 주식이 백지신탁 대상인지는 백지신탁위 등에서 좀 더 따져보아야 하겠지만, 적어도 외교통상부는 업무 속성상 해외 자원이나 플랜트 관련 수주 등에 대한 정보가 빠른 부서라는 점을 감안해 향후 법 개정 등에 반영해야 할 것임.

현 주식백지신탁제도의 문제점와 개선 방향

1. 백지신탁위의 직무연관성 여부 심사 강화 필요

- 이번 조사에서 특이할 만한 사항은 2006년 이후 심사 대상자 중 ‘직무관련 있음’ 결정이 전혀 없는 부처가 상당하는 것임. 3부 중에는 사법부(0/61)가, 행정부처 중에는 외교통상부(0/70)와 검찰청(0/21), 구 행정자치부 포함 행정안전부(0/20), 경찰청(0/16), 국방부(0/16) 등이 주요한 경우임. 이는 백지신탁위가 심사 기준 중 1호 관련(업종에 관한 정책 또는 법령의 입안·집행 등에 관련되는 직무)에 집중되어 직무 관련성을 심사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함.

2. 포괄적 직무관련성 인정해야

- 주식백지신탁심사제는 고위 공직자들의 부정행위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 고위 공직자들은 가급적 주식을 보유하지 말라는 것이 제도 도입의 취지라면, 향후 공직자윤리법 또한 포괄적 직무관련성을 인정하는 방안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임.
- 이는 2004년의 정부 원안이기도 함. 실제로 2004년 7월 참여연대 등이 개최한 <백지신탁제도 어떻게 제정할 것인가> 토론회에 참석한 박연수 당시 행정자치부 감사관(현 정부 소방방재청장 역임)은 토론문을 통해 캐나다 등은 주식을 통제재산으로 분류, 직무관련성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고 하며 “대상 직급이 낮아진다면 직무관련 주식에 한할 필요가 있으나 고위공직자의 경우 포괄적 직무 관련성, 실질적 영향력 행사의 측면에서 모든 주식을 그 대상으로”라는 기준을 제시하였으며¹⁸ 이후 행정자치부의 주식백지제도를 도입한 최초 입법예고안¹⁹에 이러한 내용은 명시적으로 반영됨. 그러나 법이 국회를 거치면서 직무관련성 판단 조항이 삽입²⁰되어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임.
- 재산공개 대상 고위공직자들의 경우에는 포괄적 직무관련성을 인정하여 백지신탁 적용의 당연 대

18 <백지신탁제도 어떻게 제정할 것인가> 토론회 자료집 p53 <http://www.peoplepower21.org/551720>

19 2004. 5. 18 행정자치부 공고 제2004 - 112호 <공직자윤리법개정안 입법예고> <http://bit.ly/SIHvu8> 중 제14조의4(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①등록대상자중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대상자는 **재산등록대상이 되는 주식의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초과하게 된 날(재산등록기준일 현재 주식의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재산등록기준일)부터 1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고 이를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당해 주식의 매각
2.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신탁(이하 “백지신탁”이라 한다)에 관한 계약의 체결

20 위 11의 “...등록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이후 “**다만, 제14조의5제7항에 따라 주식백지신탁 실시위원회로부터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결정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삽입

상이 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할 것임.

3. 심사 대상 확대되어야

- 앞의 유진그룹 주식 매매 검사들과 CNK 주식 매입 전 국무총리실 자원협력과장 등의 경우, 직 무상 취득한 정보를 바탕으로 사전정보로 주식매매를 한 경우임. 그러나 두 경우 모두 대상자 들은 주식백지신탁제의 심사 대상은 아니었음.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과 공무집행의 공정 성 확보가 현재의 대상자에 대한 심사로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임.
- 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백지신탁대상이 되는 공직자는 주식소유를 받지 않는 관행이 확립 되어야 하고, 재산공개 대상자 외에 현재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서 규정되어 있는 기획재정부 와 금융위 해당 공무원²¹에서 그 주식백지신탁 심사 대상이 훨씬 확대되어야 할 것임. 최소한 경제 부처 전반(지식경제부/국토해양부/한국은행/공정거래위 등)과 사정/감사/규제기관(검찰청 /감사원 등), 특정 업무 부처(외교통상부/방송통신위)등은 해당 기업의 정보를 이용한 주주매매 로 사익과의 이해충돌의 가능성이 높으므로 포함되어야 할 것임.

4. 심사 주식 또는 자산의 범위가 확대되어야

- 2004년과 2005년 백지신탁제도의 도입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채권, 스톡옵 션 등과 같은 금융자산도 포괄적인 백지신탁의 대상으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음. 당시 논의 에서 전제가 되었던 것은 우선 주식에 한정해 제도를 운영해 보고 나중에 대상자산의 범위를 점차 확대해 나간다는 것이었음.
- 앞서 본 바와 같이 주식백지신탁제도의 운영이 상당부분 실망스러운 것은 사실이나 7년간 제도 를 운영해본 지금 시점에서 심사대상자산의 범위를 확대하는 문제도 공론화될 필요가 있음. 특 히 공직에 취임한 전직 CEO들이 보유한 스톡옵션은 그 규모가 막대하고 이해충돌의 잠재성도 일반주식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높으므로 당장 심사대상에 포함되어야 할 것임. 주 식백지신탁제를 넘어서 금융자산백지신탁제로의 도약이 필요한 시기가 되었음.
- 2012년 초 퇴직한 이인근 전 서울시 도시안전본부장(1급)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서울 지하철 9호선 등에 민자 참여하는 맥쿼리한국인프라투금융의 주식을 총 1만3천여 주를 매입하여 보유 하여 문제가 되었으나, 2009년 백지신탁위는 해당주식이 직무관련성 없는 주식으로 고시된 부

21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7조의3(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범위) 법 제14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기획재정부의 금융정책·은행·증권·보험 등 금융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국(본부·단·부·팀을 포함한다)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4급 이상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과 금융위원회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4급 이상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동산투자회사 주식이라는 이유로 심사 자체를 하지 않은 바가 있음.

- 백지신탁위는 2005년 12월 16일 직무관련성 없는 주식으로 간접투자증권, 부동산투자회사 주식, 선박투자회사 주식, 외국기업의 주식을 고시하여 심사재산의 범위를 크게 축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이는 주식부터 시작해서 단계적으로 백지신탁의 대상재산 범위를 넓혀 나간다는 당시의 입법과정상 논의성과를 무시하고 거꾸로 간 것임.
- 이런 점에서 감안해 본다면 사실 국토해양부의 경우 심사대상이 전혀 없었던 것도 백지신탁위에서 부동산투자회사 주식에 대해 포괄적인 면죄부를 주었기 때문일 수도 있음. 특히 우리나라에서 부동산투자가 사회적으로나 역사적 경험에서 가지는 매우 각별한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백지신탁위는 지체 없이 2005년 고시를 철회해야 할 것임.

5. 고지거부 문제 해결되어야

- 주식백지신탁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지만, '고지거부'는 공직자들의 정확한 재산상황을 파악하는데 큰 장애가 되고 있음.
- 2012년 행정안전부는 재산공개 대상 고위 공직자 1천844명 중 26.6%인 490명이 직계 존비속재산 고지를 거부하였다고 발표했는데, 이렇듯 대상의 1/3가량이 고지 거부하는 수준이라면 재산공개제도는 상당 부분 무력화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함.
- 적어도 재산공개 대상인 1급 이상의 고위공직자라면 고지를 거부하지 못하게끔 해야 할 것임.

공직자의 의식개선과 백지신탁위의 제대로 된 심사 없는 주식백지신탁제도는 무용지물

- 2005년 11월 제정된 공직자윤리법 내 백지신탁제도는 제정 그 자체로서, 공직자 개인의 주식 보유에 관련한 사익과 공익의 충돌을 공직자 스스로 해소하도록 하여 공직윤리를 향상시키는데 커다란 긍정적 역할을 했다고 봄.
- 그러나 ‘포괄적 직무관련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제도의 가장 큰 맹점으로 작용함. 실제로 제정과 그 직후부터 백지신탁제도는 심사 기준 논란과 직무 회피 적절성에 대한 시비로부터 자유롭지 못했음.
- 참여연대는 백지신탁제도가 공직자 주식 보유에 어떠한 구체적 변화 양상을 가지게 될지에 특별히 주목하여 이 모니터링 작업을 진행하였음. 그러나 일부 부처의 경우, 주식 보유 제한이라는 소기의 성과는 내지 못하고, 오히려 주식 보유의 정당성 확보 수단으로 작용했다는 결론을 내릴 수 밖에 없음.
- 이는 더욱 강화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반증함.
 - 적어도 재산공개 대상자들의 경우에는 ‘포괄적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여 상한선을 넘는 모든 주식을 백지신탁 대상으로 삼아야 함.
 - 심사 대상은 더욱 확대되어야 할 것임. 외교통상부의 예는 보유 주식의 직무 관련성이 재산공개 대상자가 아니라고 해서 결코 무관하지 않음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일 것임.
 - 별도로 고지거부 제도는 선결되어야 할 과제임.
-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직자 스스로의 이해충돌 가능성 해소 노력과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백지신탁위의 제대로 된 심사임. 제도가 아무리 개선되고 강화되어도 이러한 행태가 바뀌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음.
- 참여연대는 이후에도 주식백지신탁제도에 대한 모니터링을 계속 진행해 지속적으로 제도적 보완을 해 나갈 것임. [▶](#)

별표 1> 2006~2012 백지신탁 심사 종합 현황표

구분(가나다 순)	연도	접수	심사결과				계류중
			소계	있음	없음	각하 철회	
감사원	2009	2	2	0	2	0	0
검찰청	2006	4	4	0	3	1	0
	2007	2	2	0	2	0	0
	2008	3	3	0	3	0	0
	2009	6	5	0	6	0	0
	2011	4	4	0	4	0	0
	2012	2	2	0	2	0	0
	경찰청	2006	5	5	0	4	1
2007		1	1	0	1	0	0
2008		2	2	0	2	0	0
2009		2	2	0	2	0	0
2010		3	3	0	3	0	0
2011		2	2	0	2	0	0
2012		1	1	0	1	0	0
고용노동부	2011	2	2	0	2	0	0
고충처리위원회	2006	1	1	0	1	0	0
공정거래위원회	2006	1	1	1	0	0	0
	2009	1	1	1	0	0	0
과학기술부	2006	3	3	1	1	1	0
관세청	2009	1	1	0	1	0	0
교육과학기술부	2008	2	2	0	2	0	0
	2010	1	1	0	1	0	0
	2011	1	1	0	1	0	0
	2012	1	0	0	0	0	1
교육인적자원부	2007	1	1	0	1	0	0
국가과학기술위원회	2012	2	2	0	1	1	0
국가기술자문위원회	2007	1	1	0	1	0	0
국가인권위원회	2006	1	1	0	1	0	0
	2008	1	1	0	1	0	0
국가정보원	2008	2	2	0	2	0	0
	2009	3	3	0	3	0	0
	2010	1	1	0	1	0	0
	2012	1	1	0	0	1	0
국가청렴위원회	2007	1	1	0	1	0	0
국가청소년위원회	2007	2	2	0	2	0	0
국무조정실	2007	2	2	2	0	0	0
국무총리실	2008	2	2	2	0	0	0

구분(가나다 순)	연도	접수	심사결과				계류중
			소계	있음	없음	각하 철회	
	2010	2	2	1	1	0	0
	2011	1	1	0	1	0	0
	2012	2	2	0	2	0	0
국민권익위원회	2008	2	2	1	0	1	0
	2011	1	1	0	1	0	0
	2012	1	1	0	1	0	0
국방부	2006	6	6	0	6	0	0
	2009	1	1	0	1	0	0
	2010	4	4	0	4	0	0
	2011	4	4	0	4	0	0
	2012	1	1	0	1	0	0
국정홍보처	2006	1	1	1	0	0	0
군의문사진상규명위	2006	1	1	0	1	0	0
	2009	1	1	0	1	0	0
금융위원회	2010	1	1	0	1	0	0
기획예산처	2006	1	1	0	1	0	0
기획재정부	2008	1	1	1	0	0	0
	2012	2	1	1	0	0	1
노동부	2007	1	1	1	0	0	0
	2008	2	2	1	1	0	0
농림부	2006	1	1	0	1	0	0
농림수산식품부	2008	1	1	0	1	0	0
	2011	3	3	1	2	0	0
	2012	1	1	0	1	0	0
농촌진흥청	2008	1	1	0	1	0	0
대통령 경호실	2007	1	1	0	0	1	0
대통령비서실	2007	1	1	1	0	0	0
	2008	8	8	7	0	1	0
	2009	2	2	0	2	0	0
	2010	7	7	0	7	0	0
대통령실	2006	4	4	3	0	1	0
	2011	5	5	1	4	0	0
	2012	2	2	1	1	0	0
문화체육관광부	2006	1	1	0	1	0	0
	2007		0	0	0	0	0
	2008	1	1	0	1	0	0
	2011	2	2	0	1	1	0
민주평통자문회의	2008	1	1	0	1	0	0
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	2006	1	1	0	1	0	0
방송위원회	2006	6	6	0	5	1	0

구분(가나다 순)	연도	접수	심사결과				계류중
			소계	있음	없음	각하 철회	
방송통신위원회	2008	5	5	0	5	0	0
	2009	1	1	0	1	0	0
	2010	1	1	0	1	0	0
	2011	2	2	1	1	0	0
방위사업청	2008	1	1	1	0	0	0
	2011	1	1	0	1	0	0
법무부	2006	1	1	0	1	0	0
	2008	1	1	0	1	0	0
	2010	4	4	0	3	1	0
	2011	1	1	0	1	0	0
법제처	2008	1	1	0	1	0	0
보건복지가족부	2008	2	2	0	2	0	0
보건복지부	2007	1	1	0	1	0	0
	2010	1	1	1	0	0	0
비상기획위원회	2006	2	2	1	1	0	0
산업자원부	2006	1	1	0	1	0	0
소방방재청	2009	1	1	0	1	0	0
	2012	1	1	0	1	0	0
식품의약품안전청	2006	1	1	0	0	1	0
여성가족부	2012	1	1	0	1	0	0
외교통상부	2006	25	25	0	25	0	0
	2007	7	7	0	7	0	0
	2008	10	10	0	10	0	0
	2009	5	5	0	5	0	0
	2010	10	10	0	10	0	0
	2011	9	9	0	9	0	0
	2012	4	4	0	4	0	0
재정경제부	2006	1	1	0	1	0	0
정보통신부	2006	2	2	1	1	0	0
중앙인사위원회	2006	2	2	0	2	0	0
	2007	2	2	0	2	0	0
지식경제부	2012	1	1	1		0	0
진실화해과거사정리위	2010	1	1	0	1	0	0
청소년위	2006	2	2	0	2	0	0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	2007	2	2	0	2	0	0
	2008	3	3	0	3	0	0
	2009	1	1	0	1	0	0
통계청	2006	1	1	0	1	0	0
통일부	2011	1	1	0	1	0	0
	2012	1	1	0	1	0	0
해양경찰청	2009	1	1	0	1	0	0

구분(가나다 순)	연도	접수	심사결과				계류중
			소계	있음	없음	각하 철회	
	2010	2	2	0	2	0	0
	2011	1	1	0	1	0	0
해양수산부	2006	2	2	1	1	0	0
	2008	1	1	0	0	1	0
행정안전부	2008	3	3	0	3	0	0
	2009	1	1	0	1	0	0
	2010	4	4	0	4	0	0
	2011	4	4	0	2	2	0
	2012	2	2	0	2	0	0
행정자치부	2006	5	5	0	5	0	0
	2007	1	1	0	1	0	0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07	1	1	0	1	0	0
환경부	2011	2	2	0	2	0	0
공직유관단체	2006	50	50	15	33	2	0
	2007	29	29	8	21	0	0
	2008	53	53	17	34	2	0
	2009	15	15	4	11	0	0
	2010	21	21	1	19	1	0
	2011	49	49	5	38	6	0
	2012	32	28	7	19	2	4

※ 본 보고서를 위한 기초조사는 이미리 참여연대 10기 인턴이 함께 했습니다.

※ 본 자료는 웹으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블로그 blog.peoplepower21.org/Government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제2012-24호
주식백지신탁제 시행 7년 모니터 보고서

발 행 일 2012. 11. 28

발 행 처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부소장 장유식 변호사)

담 당 명광복 선임간사 02-723-5302, elle@pspd.org

Copyright ©참여연대, 2012 ※본 자료는 참여연대 웹사이트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시민의 힘! 정부보조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대표전화 02-723-5300

회원가입 02-723-4251

ARS후원 060-7001-060

주 소 110-043 서울시 종로구 통인동 132번지

홈페이지 www.peoplepower21.org
